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2019-188호 『사회봉사 5일』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2. 17.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5일』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XX구 YY동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2. 9. 이 사건 학교의 2학기 기말고사 3교시 ●●시

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 하였다는 이유(시험 관계된 내용이 담겨 있는 쪽지 소지)로, □□□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되었다.

다. 2019. 12. 12. 개최된 선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학교의 학생선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별표2> 징계기준 16항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5일’ 이 결정 되었고, 2019. 12.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회봉사 5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3.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험 기간에 시험 내용이 담겨 있는 쪽지를 소지한 것은 시험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에 이를 증명하고자 시험 감독 교사, 담임교사 등을 찾아가 당시의 상황과 억울함을 호소했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할 같은 반 학생의 증언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사안조사를 바탕으로 징계처분해야 함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보호자는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사실관계를 모른

채 학교를 방문하였고,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상담에서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학생부 교사의 말만 믿고 선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친구의 진술을 통해 교사가 설명해 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배부한 가정통신문을 보면 명확한 부정행위 간주 규정이 실시되어 있으나, 시험시간 중 쪽지 등의 소지와 관련해서는 ‘시험 시작 전 책상 속 물건과 모든 소지품은 가방에 넣고, 책상 위에는 시험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0점 처리한다’ 고 명시하지 않은 취지에 비추어 ‘쪽지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라. 청구인은 지난 2년간 전교회장(이 사건으로 인해 사퇴함)과 부회장 및 교내·외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이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학교는 시험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에게 부정행위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였고, 청구인은 쉬는 시간에 충분하게 물건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중에 시험 내용과 관련된 쪽지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은 충분히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쪽지는 a4용지 1/4사이즈에 그것을 또 반으로 접은 종이이며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각 방향에 ●● 내용이 적혀 있는데, 선도위원회에서는 이 쪽지의 형태와 적발경위, 학생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단순히 외투를 벗다가 쪽지가 떨어졌고, 이를 줍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위서에는 ‘시험이 시작되고 옷을 다듬고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려다가 이번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학생부에서는 바닥에서 떨어진 것을 책상 서랍에 넣으려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감독교사의 확인서에는 ‘시험지 사이에 쪽지가 끼어져 있었다’ 라고 진술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청구인의 쪽지는 시험지 사이에 있어 감독교사가 들춰서 발견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절차대로 청구인의 경위서와 감독교사의 진술서 및 각 경위서에 대한 청취 등 사안조사를 하였고, 청구인과 그 보호자의 선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보장 및 징계결과 불복 절차 안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라. 학생부 교사는 청구인이 빠르게 학교생활에 전념하고 이 사안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심한 것이 걱정되어 청구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하였으나,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이 아니고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사안 이후에 청구인의 보호자가 청구인을 다독이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으며, 학생에 대한 교육적 목적에 따른 상담

이었고, 학생의 잘못에 따른 선도위원회와는 별개로 학생의 인성을 고려한 교육적 조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나. 「인천□□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제7조 제2항 및 <별표2> 징계기준 16항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감독교사는 2019. 12. 9. 3교시 ●●시험 감독 중 오전 11시 16분 무렵 청구인의 책상에 있는 2장의 시험지 사이에 있는 작은 종이를 발견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암기노트는 감독교사가 발견한 작은 종지와 크기 및 형식 등이 서로 다르다.

나. 청구인은 경위서에,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려다가 이번 일이 발생되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바로 꺼내서 가방에 넣는 것도 부정행위에 들어갈까 봐 망설이다가 어찌다가 발각된 것” 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그 이후 청구인의 주장 및 다른 학생이 작성

한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다르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선도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선도규정은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 방법을 통한 학생지도로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기본 생활 습관의 생활화를 기하여 건전한 학생상을 구현함에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도 학생의 선도·교육 및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나. 이 사안의 경우 감독교사가 시험 도중 청구인이 소지한 종이를 발견하였고, 그 종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암기노트의 형식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옷에 있던 암기노트가 바닥에 떨어져서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하면 공익상 필요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